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의 안 번 호	1095

요구연월일 : 2024. 6. 28.

요 구 자 : 박성준・김남희・김승원
김용만・김용민・김태선
모경종・박균택・곽상언
박지원・백승아・부승찬
서미화・서영교・송재봉
안태준・이건태・이성윤
장경태・전현희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정점식)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은 2024년 6월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청문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와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고 발언했음.

다.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청문회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사건 이후 처음으로 故채해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후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해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원 정청래)이 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등의 조항을 언급,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국민 앞에 나선 만큼 진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수차례 당부했음.

라. 이후 신문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지속하며,

자신들에 불리한 신문이 나오면 위원들의 신문 중간에 끼어들어 답변하는 등 청문회 내내 거짓된 답변과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거짓이 드러나면 '착각했다', '기억이 잘못됐다' 등으로 빠져나가고 회의를 방해하는 언행이 계속되어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에 의거 퇴장할 수 있음을 지속 경고했음. 경고 이후에도 같은 언행이 반복돼 부득이하게 10분간 퇴정한 바 있음.

마.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故채해병의 직속상관으로 故채해병의 순직에 지휘책임과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부하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에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들과 함께 이를 질타했음.

바. 청문회 내용에 대해 국민은 "청문회 방송을 본 논리가 작동하는 국민들이라면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섰으면서도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더군요.", "선서 안 한 놈이 범죄자다. 보면 모르겠는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윤석렬이 보호해 줄 것 같은가? 가장 처참하게 댓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힘당 국회의원님들아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이면 국민 한사람이라도 의혹이 안 남게 떳떳이 밝히는 거지 대통령이 한사람 지키자고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정치든 뭐

든 일단 의혹이 남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어떻게 이게 통과가 안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증인선서를 거부한다... 윤석렬을 믿고 있나보구나. 국민들이 끌어내린다. 법대로 해야한다.”, “장병이 헛되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지키려고 저렇게 뻔뻔하냐. 그리고 수사를 시켰으면 전권을 수사단장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무엇이 항명이라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등 그동안 故채해병 순직과 관련된 책임차 처벌도,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청문회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해졌으며,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청문회를 높이 평가한 바 있음.

사. 그럼에도 ‘인권침해’, ‘모욕’, ‘횡포’ 등의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 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원 정청래)과 입법청문회를 비하한 것은 입법청문회의 본질을 흐려 故채해병 순직 책임자와 수사외압 책임자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故채해병 순직 책임자와 수사외압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전방위적으로 한 의원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아. 이렇듯 국회의원 정점식은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로 대

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자. 위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점식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